

2026학년도 재외국민과 외국인 특별전형 모집요강



차 의과학대학교
CHA UNIVERSITY

※ 본 모집요강은 대학 구조개혁을 위한 학과(전공) 개편 및 정원 조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최종확정본은 원서접수 이전에 본교 입학안내 홈페이지(<https://admission.cha.ac.kr>)에서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목 차

I.	전형요약 및 주요사항	1
II.	모집단위 및 모집인원	1
III.	원서접수 및 전형일정	2
IV.	지원자격	3
V.	전형방법 및 선발원칙	5
VI.	제출서류	8
VII.	지원자 유의사항	9
VIII.	등록포기 및 환불 안내	12
IX.	전형료 및 전형료 환불 안내	12

【별첨: 주요서식】

【양식1】 2026학년도 재외국민과 외국인 특별전형 학력조회 동의서

【양식2】 2026학년도 재외국민과 외국인 특별전형 사유서(해당자 활용 서식)

【양식3】 2026학년도 재외국민과 외국인 특별전형 학생활동 목록표(희망자 활용 서식)

【양식4】 2026학년도 재외국민과 외국인 특별전형 교육과정 기록표

【양식5】 2026학년도 재외국민과 외국인 특별전형 외국학교 현황표

※ 기타 활용 서식은 '입학안내 홈페이지(<https://admission.cha.ac.kr/>) ▶ 재외국민/외국인 ▶ 자료실'에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음

I. 전형요약 및 주요사항

모집단위	주요사항			비고
	모집인원	선발모형	수능최저학력기준	
재외국민과 외국인	간호대학: 4명	• 일괄합산: 서류평가 30% + 면접평가 70%	미적용	• 수시 6회 지원 포함
	약학대학: 3명		적용	
	미래융합대학: 4명		미적용	
전 교육과정 이수자	간호대학: 0명		미적용	• 수시 6회 지원 미포함
	미래융합대학: 0명		미적용	

II. 모집단위 및 모집인원

모집단위	학과(전공)		모집인원	
			재외국민과 외국인	전 교육과정 이수자
간호대학	간호학과		4명	0명
약학대학	약학과		3명	
미래융합대학	생명과학부	세포·유전자재생의학 전공 시스템생명과학 전공 바이오식의약학 전공	4명	0명
	헬스케어 융합학부	디지털보건의료 전공 스포츠의학 전공 경영학 전공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 전공 심리학 전공 AI의료데이터학 전공 미술치료 전공 소프트웨어융합 전공		

- ※ 간호학 학사학위 프로그램 재단법인 한국간호교육평가원 인증 획득(2024. 12. 17.) [인증기간: 2025. 6. 11. ~ 2030. 6. 10.]
- ※ '전 교육과정 이수자' 전형은 간호대학과 미래융합대학에 한하여 수용 범위 내에서, 지원자의 수학능력을 고려하여 약간 명씩 선발함
- ※ 미래융합대학에 등록한 학생은 무전공으로 입학한 후, 2학년 진급 시 학부와 무관하게 위 전공 중 1, 2전공(2개 전공)을 선택함(정원 제한 없음). 단, 대학 구조 개편 등으로 전공명은 변경될 수 있음(간호학과와 약학과는 관계 없음)
- ※ 2026학년도 편제 및 정원 조정에 따라 모집단위, 전공명, 모집인원 등은 변경될 수 있으며, 신입학 모집에 합격하여 등록한 학생은 변경된 편제에 따라야 함

III. 원서접수 및 전형일정

1. 입학원서 접수방법(한국형 공통원서접수시스템 적용)

① 원서접수 사이트 접속	• 원서접수대행사(유웨이어플라이) 접속
② 회원가입 및 로그인	• 반드시 지원자 본인 명의로 회원 가입해야 함(보호자 등 타인 아이디로는 원서접수 불가)
③ 유의사항 확인 및 동의	• 인터넷 원서접수 유의사항을 반드시 읽고 접수 관련 동의서 확인 후 진행
④ 원서 입력 및 사진 첨부	• 개인 인적사항, 연락처, 전형유형, 모집단위 등을 정확히 기입해야 하며, 누락/오기에 대한 책임은 지원자 본인에게 있음 • 사진은 최근 6개월 내 촬영한 증명사진 파일로 업로드 함
⑤ 원서 입력사항 확인	• 전형료 납부 전 반드시 최종 작성 내용을 확인해야 함 ※ 전형료 납부 후에는 전형유형 및 모집단위 등 기재사항 수정 불가
⑥ 전형료 결제	• 무통장 입금, 신용카드 결제, 휴대폰 결제 등을 통하여 전형료 납부 ※ 전형료 납부 후에는 원서접수 취소가 불가함
⑦ 수험번호 확인	• 전형료 결제 후 수험번호가 부여되면 원서접수가 정상적으로 처리된 것임
⑧ 서류제출 (필수서류 및 선택서류 해당자)	• 제출기한: 2025. 7. 7.(월) ~ 15.(화) • 제출방법: 방문 또는 등기우편 제출
	• 제출처: (우) 11160 경기도 포천시 해룡로 120 차 의과학대학교 입학홍보처 재외국민 전형 담당자 앞
	※ 발송용 봉투표지를 대봉투 겉면에 부착하여 발송 [발송용 봉투표지는 원서접수 후 사이트에서 출력 가능] ※ 등기우편: [국내발송] 마감일(2025. 7. 15.(화)) 우체국 소인 유효 [국외발송] 2025. 7. 17.(목) 도착분까지 인정 ※ 방문 제출: 서류제출 기간 중 매일 10:00 ~ 17:00 [단, 점심시간(12:00 ~ 13:00), 주말 및 공휴일은 접수 불가]

2. 전형일정

구분	일정	비고
원서접수	2025. 7. 7.(월) 10:00 ~ 11.(금) 17:00	• 원서접수대행사(유웨이어플라이) 접수
서류제출 (방문 또는 우편 제출)	방문 제출 2025. 7. 7.(월) 10:00 ~ 15.(화) 17:00	• 제출방법: 방문 또는 등기우편 제출 • 제출처: (우) 11160 경기도 포천시 해룡로 120, 차 의과학대학교 입학홍보처 재외국민전형 담당자 앞
	우편 제출 - [국내 발송] 2025. 7. 15.(화) 우체국 소인 유효 - [국외 발송] 2025. 7. 17.(목) 도착분까지 인정	• 방문 접수 시간: 서류제출 기간 중 매일 10:00 ~ 17:00 [단, 점심시간(12:00 ~ 13:00), 주말 및 공휴일 접수 불가] • 발송용 봉투표지를 대봉투 겉면에 부착하여 발송 [발송용 봉투표지는 원서접수 후 사이트에서 출력 가능]
면접고사	2025. 8. 20.(수) ~ 22.(금) 중 지정일	• 입학안내 홈페이지에 공지(https://admission.cha.ac.kr)
합격자 발표 [간호대학, 미래융합대학]	2025. 9. 9.(화) 16:00	• 수능최저학력기준 미적용 모집단위 발표 • 입학안내 홈페이지에 공지(https://admission.cha.ac.kr) • 개별연락은 하지 않음
합격자 발표 [약학대학]	2025. 12. 12.(금) 16:00	• 수능최저학력기준 적용 모집단위 발표 • 입학안내 홈페이지에 공지(https://admission.cha.ac.kr) • 개별연락은 하지 않음
합격자 등록	2025. 12. 15.(월) ~ 17.(수)	• 입학안내 홈페이지에 공지(https://admission.cha.ac.kr)
충원합격자 발표	2025. 12. 18.(목) ~ 23.(화) 18:00 까지	
충원합격자 등록	2025. 12. 18.(목) ~ 24.(수) 16:00	
등록금 납부	2026. 2. 3.(화) ~ 5.(목)	

※ 본교 사정에 따라 위 일정은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모든 일정은 대한민국 표준시 기준임

※ 면접고사 일정, 합격자 발표에 관한 세부사항은 본교 입학안내 홈페이지(<https://admission.cha.ac.kr>)에 게시하며 개별연락은 하지 않으므로, 미확인으로 인한 합격 취소 등 모든 불이익은 지원자 본인의 책임이니 유의하여야 함

IV. 지원자격

1. 전형별 지원자격

가. 재외국민과 외국인(「고등교육법 시행령」제29조제2항제2호)

- 1) 지원자격: 우리나라 학제(12년)에 준하는 정규 교육과정을 모두 이수한 고등학교 졸업(예정)자 중, 역년으로 통산 3년(1,095일) 이상을 국외 근무/사업/영업을 목적으로 배우자와 학생과 함께 국외에 체류한 자의 자녀

2) 자격요건

구분	내용	비고
국외재학기간	• 고교과정 1개 학년을 포함 중·고교 과정 3년 이상	• 국외근무자의 근무지 국가 소재 학교만 인정
국외체류기간	• 학생: 학생 국외재학기간 중 각각의 1개년 기간마다 3/4 이상 • 부모: 학생 국외재학기간 중 각각의 1개년 기간마다 2/3 이상	-
국외근무자 재직기간	• 역년으로 통산 3년(1,095일) 이상의 국외 근무/사업/영업	-

- ① 국외근무자: 역년으로 통산 3년(1,095일) 이상의 국외 근무/사업/영업을 목적으로 배우자 및 학생과 함께 국외에 체류한 자
 - ② 국외근무자의 자녀: 부모 중 1인 이상이 역년으로 통산 3년(1,095일) 이상을 국외 근무자로 재직/사업/영업하는 기간 동안, 국외근무자의 근무지 국가 소재 학교에서 고교과정 1개 학년 이상(해당기간에 진행되는 학제상의 모든 학기)을 포함하여 중·고교과정을 3개 학년 이상 수료한 자
 - ③ 국외재학기간
 - ▶ 학생이 학기 개시 일부터 국외근무자의 근무지 국가 소재 학교에 재학하였을 경우: 학기 개시 일부터 다음 학년도 동일 학기 개시일 전일(약 365일)까지를 1개 학년으로 함(단, 해당 1개 학년 기간 내 모든 학기를 이수한 자는 학기 개시일부터 다음 학년도 동일 학기 개시일 직전 학기 종료일까지를 1개 학년을 충족한 것으로 간주함)
 - ▶ 학생이 중간에 편입학하여 학기 개시일부터 재학하지 못한 경우: 편입학 일로부터 역년으로 1년(365일)되는 일까지를 1개 학년으로 함
 - ④ 국외체류일수 조건
 - ▶ 학생이 학기 개시 일부터 국외근무자의 근무지 국가 소재 학교에 재학하였을 경우: 학기 개시 일부터 다음 학년도 동일 학기 개시일 전일(약 365일)까지 각각의 1개년 기간마다 학생 본인은 3/4이상을, 국외 근무/사업/영업자와 그 배우자는 2/3이상을 국외근무자 근무지 국가에서 체류하여야 함
 - ▶ 학생이 중간에 편입학하여 학기 개시일 부터 재학하지 못한 경우: 편입학 일로부터 역년으로 1년(약 365일) 되는 일까지 각각의 1개년 기간마다 학생 본인은 3/4이상을, 국외근무/사업/영업자와 그 배우자는 2/3이상을 국외근무자 근무지 국가에서 체류하여야 함
- ※ 체류일정 산정 시, 소수점 절사

나. 전 교육과정 이수자(「고등교육법 시행령」제29조제2항제7호)

- 1) 지원자격: 국외에서 우리나라 초·중등교육에 상응하는 교육과정을 전부 이수하고 국외 정규 고등학교 졸업(예정)인 재외국민과 외국인, 또는 「국적법」제6조제2항에 따라 귀화 허가를 받은 자
- 2) 이수자 인정 범위 상세
 - ① 국외에서 전 교육과정을 이수하면 국내 초·중등학교 재학 여부와 관계없이 인정함
 - ▶ 국외 동일 학년제에서 초·중·고 전 과정을 이수한 경우, 이수 연한이 12년이 되지 않더라도 전 교육과정 이수자로 인정함
 - ▶ 학년제가 다른 국외 2개 학교 이상에서 전 교육과정을 이수한 경우, 우리나라 학년제에 준하여 12년 이상을 이수해야 하며, 학년제로 인해 부족한 학교 교육과정의 기간은 해당국 대학에서 이수한 기간을 고등학교 과정 이수로 인정함
 - ② 학제가 다른 2개 학교 이상에서 12년 이상의 초·중등과정을 이수한 자가 전·편입학하는 과정에서 학제 차이로 불가피하게 총 재학기간이 누락된 경우 1학기(6개월) 이내에서 예외적으로 인정함

- ③ 국외에서 전 교육과정을 이수하면 방학, 국외학교 및 해당 국가에서 정한 휴일에 국내에 임시로 체류하는 경우에도 이수자로 인정함

2. 공통 안내사항

가. 지원자격 인정 유효기간: 고등학교 졸업 후 지원자격 인정에 유효기간을 두지 않음

나. 국외학교 인정 기준

- 1) 대한민국 이외의 국가에 소재하는 학교
- 2) 해당국의 교육관계 법령 등에 의거하여 소정의 학력이 인정되는 초·중·고 과정의 학교
- 3) 대한민국 내의 외국인 학교는 인정하지 않음
- 4) 유아원, 유치원 및 어학연수 목적의 교육 기관은 인정하지 않음
- 5) 국외근무자의 근무국에 소재한 학교만 인정(단, 부모가 근무하는 국가의 지역, 종교, 이데올로기 등의 특성상 제3국에서의 수학이 불가피하다고 판단될 경우 본교 「대학입학전형관리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예외적으로 인정 할 수 있음)

다. 재학기간 인정 기준

- 1) 모든 지원자는 국내·외에서 우리나라 학제(12년)에 준하는 전 교육과정을 이수하여야 함. 단, 학제차이로 인해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수학기간의 결손은 1개 학기(6개월)에 한하여 인정함(우리나라 학제 기준, 총 23학기 - 11년 6개월 이상 충족)
- 2) 해당국의 교육관계 법령 등에 의한 학제 상 월반(전·편입학 시 월반은 미인정) 또는 조기졸업제도가 허용된 경우 초·중·고 12년 과정 중 월반 또는 조기졸업으로 인하여 부족하게 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인정함
- 3) 동일 학년(학기) 중복 수료로 인한 수학 기간은 원칙적으로 인정하지 않음. 단, 학제 차이로 인한 중복은 재학이 연속적인 경우에 한하여 인정함(복수 발생 인정)
 - 누락된 학기는 중복된 1개 학기로 대체할 수 있음
 - 2개 학기 이상 연속 중복 학기의 경우 누락된 1개 학기로 대체할 수 있음
 - 중복 학기 등 지원자격 검토 시 제출서류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부정·편법·악용 사례로 판명될 경우는 대학이 인정하지 아니할 수 있음

예시) 중복과 관련하여 지원자격 충족 사례														[D: 국내학교, A: 국외학교]													
학년	1		2		3		4		5		6		7		8		9		10		11		12				
학기	1	2	1	2	1	2	1	2	1	2	1	2	1	2	1	2	1	2	1	2	1	2	1	2			
재학 기간	D	D	D	D					D	D	D	D	D					D	D	D							
				A	A	A	A	누락					A	A	A	A	누락				누락	A	A	A			
중복학기 G2-2로 G4-2 대체 가능														중복학기 G7-1로 G9-1 대체 가능										G11-1학제 차이로 인한 누락으로 인정			
※ 학제 차이로 인한 경우에 한함																											

- 4) 국내·외 검정고시, 홈스쿨링, 사이버학습 등의 학력인정방법은 지원자격으로 인정하지 않음
- 5) 재학기간은 성적을 취득한 학기만 인정하며 유급한 기간은 제외함
- 6) 이외 지원자격에 대한 사항은 본교 「대학입학전형관리위원회」에서 결정함

라. 기타 유의사항

- 1) 복수국적자는 국내 국적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으로 지원해야 함
- 2) 대한민국의 학년도가 끝나는 2026년 2월 28일을 자격인정 기준시점으로 함
- 3) 해당 국가의 학제상 학년도와 학기 개시일이 대한민국보다 1개월이 늦은 국가(일본 등)는 1개월의 재학 예정기간의 범위 내에서 국외 학교 재학 기간만을 예외적으로 인정함
- 4) 졸업예정자 등 조건부 자격 충족자는 반드시 합격 후 2026. 2. 20.(금)까지 자격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자격 조건 미충족 시 합격을 취소함(2026. 2. 20. 발송 소인분까지 인정함)
[대한민국보다 학제상 학년도와 학기 개시일이 1개월 늦은 국가의 경우, 2026. 4. 3.(금)(도착일 기준)까지 제출]

- 5) 지원자격 검토 시 제출서류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부정·편법·악용 사례로 판명될 경우에는 지원자격을 인정하지 아니할 수 있음
- 6) 본 요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본교 「대학입학전형관리위원회」의 결정에 따름
- 7)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COVID-19)로 인하여 재직기간, 재학기간, 체류기간 등 지원자격 미충족 사유가 발생한 경우 이와 관련한 소명자료를 제출받아 지원자격을 인정할 수 있음

V. 전형방법 및 선발원칙

1. 전형방법 및 전형요소

모집단위	선발모형	전형요소별 반영비율		전형총점
		서류평가	면접평가	
간호대학	일괄합산	30(30%)	70(70%)	100(100%)
약학대학				
미래융합대학				

※ 서류평가, 면접평가 성적을 합산한 총점 순으로 최종합격자를 선발

※ 지원자의 수학능력이 본교의 기준에 현저히 미달되는 경우, 모집인원과 지원자 수에 상관없이 본교 「대학입학전형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입학을 허가하지 않을 수 있음

2. 전형요소별 평가방법

구분		내용
서류평가	평가내용	학업역량, 진로역량, 공동체역량
	평가방법	지원자 1인당 2명 이상의 평가위원이 제출된 전형자료를 검토하여 학업역량, 진로역량, 공동체역량에 대해 정성적 종합평가
면접평가	평가내용	진로역량, 인성, 발전가능성, 한국어 능력
	평가방법	지원자 1인당 2명 이상의 평가위원이 제출된 전형자료 내용에 관해 확인하고 진로역량, 인성, 발전가능성, 한국어 능력에 대해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심층면접

3. 수능최저학력기준

구분		수능최저학력기준
간호대학, 미래융합대학		미적용
약학대학	재외국민과 외국인	국어, 수학, 영어, 탐구(1과목) 중 3개 영역 등급 합 7(수학 필수 반영)

4. 학교폭력 조치사항 반영방법

가. 기본사항

- 1) 전형자료 중 학교폭력과 관련한 내용 및 조치사항이 기재되어 있을 경우, 국내·외 고등학교 구분없이 아래 '나. 반영방법'을 준용하여 사정하며, 본교 「대학입학전형관리위원회」에서 최종 심의·결정함
- 2) 국내 고등학교 재학 사실 등으로 학교생활기록부가 있는 경우에는 고등학교 최종학력 유형(예: 검정고시 대상자, 국외고 출신자 등)과 관계없이 학교폭력 조치사항을 동일 적용함. 단, 관련 사실을 확인할 수

- 없는 국외 고등학교 출신자 등 학교폭력 조치사항을 반영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제외될 수 있음
- 3) 복수의 학교폭력 조치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그 중 중한 조치 기준을 적용함
- 4) 전형별 사정 이후 발생한 학교폭력조치에 관한 사항은 본교 「대학입학전형관리위원회」에서 심의 결정하며, 합격 후라도 입학을 취소할 수 있음

나. 반영방법

국내 고등학교 학교생활기록부 학교폭력 조치사항		전형별 반영방법	
		재외국민과 외국인	전 교육과정 이수자
1호	피해학생에 대한 서면사과	정성평가	
2호	피해학생 및 신고·고발 학생에 대한 접촉, 협박 및 보복행위 금지		
3호	학교에서의 봉사		
4호	사회봉사		
5호	학내외 전문가에 의한 특별교육이수 또는 심리치료		
6호	출석 정지		
7호	학급 교체		
8호	전학	[서류평가] 공동체역량 0점 처리 [면접평가] 인성 0점 처리	
9호	퇴학 처분		

※ 학교생활기록부 및 전형자료 상의 기재 특성으로 각 '호' 또는 학교폭력 조치사항의 각 호별 조치사항의 명기가 없더라도, 조치 내용(결과)이 각 호별 조치사항과 유사 또는 수준에 준하는 것으로 판단될 경우 반영방법을 적용하여 사정하며, 본교 「대학입학전형관리위원회」에서 최종 심의·결정함

다. 제출서류 및 제출방법

대상자	제출서류 및 제출방법	비고
국내 고등학교 또는, 재외 한국학교 졸업자 (국내 고등학교 학교생활기록부 또는, 재외 한국학교 학교생활기록부 보유자)	- 제출서류 : 고등학교 학교생활기록부 1부 - 제출방법 : 'Ⅲ-2. 전형일정 - 서류제출'의 기한 및 방법과 동일	- 국내 고등학교와 재외 한국학교를 모두 다닌 경우 관련 학교생활기록부를 모두 제출해야함 - 고등학교 졸업(예정)증명서, 재학증명서, 성적증명서 제출을 위하여 학교생활기록부 원부를 제출한 경우, 본 서류를 활용하며, 이 경우 학교생활기록부를 별도 제출하지 않아도 됨
국외 고등학교 출신자 (국내 고등학교 학교생활기록부 또는, 재외 한국학교 학교생활기록부 보유자)		
국외고 출신자 (국내 고등학교 학교생활기록부 또는, 재외 한국학교 학교생활기록부 미보유자)	제출 서류 없음 (반영 제외)	- 전형자료로 제출된 서류에 학교폭력 조치사항과 관련된 기재사항이 있을 경우 반영방법에 따라 사정하여 심의·결정함

5. 선발원칙

- 가. 전형 총점 석차 순으로(1단계 성적 70% + 면접평가 30%)으로 모집단위별 모집인원 최종 선발
- 나. 제출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선발대상에서 제외함

- 다. 면접고사 결시자 및 수학능력시험 미응시자(약학대학에 한함)는 선발 대상에서 제외함
- 라. 동점자가 발생하는 경우 동점자 처리기준에 따라 선발함
- 마. 대입전형의 공정성을 심각하게 위배하는 경우 선발대상에서 제외, 합격 취소함
- 바. 해당 모집단위의 지원자 수가 모집인원에 미달되더라도, 지원자의 대학수학능력이 현저하게 부족한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선발하지 않을 수 있음
- 사. 전형 점수가 일정 수준 이하인 경우 선발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 아. 최종 합격 인원은 본교 「대학입학전형관리위원회」에서 심의하여 결정

6. 동점자 처리기준

- 동점자가 발생할 경우 다음의 사정 원칙에 따라 모집인원 내로 선발함

구분	처리 기준
1순위	면접평가 점수 우수자
2순위	면접평가 진로역량 점수 우수자
3순위	면접평가 인성 점수 우수자
4순위	면접평가 발전가능성 점수 우수자
5순위	서류평가 진로역량 점수 우수자
6순위	서류평가 학업역량 점수 우수자
7순위	서류평가 공동체역량 점수 우수자

- ※ 동점자 처리기준 적용 후에도 동점자 발생 시에는 본교 「대학입학전형관리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합격자를 선발하며, 이 경우 지원자의 과목 이수 현황 등이 처리기준에 활용될 수 있음

VI. 제출서류

1. 제출서류

전형명	구분	제출서류
재외국민과 외국인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29조제2항제2호)	필수 (공통)	• 고등학교 졸업(예정)증명서*
		• 초·중·고등학교 재학증명서*
		• 초·중·고등학교 성적증명서*
		• 가족관계증명서(학생)
		• 출입국사실증명서(부모, 학생)
		• 사실증명발급·열람신청 위임장(부모, 학생)(대학 서식 활용)
		• 여권 사본(부모, 학생)
		• 재외국민등록부등본(부모, 학생)**
		• 학력조회 동의서(대학 서식 활용)
		• 교육과정 기록표(대학 서식 활용)
		• 외국학교 현황표(대학 서식 활용)
	필수 (해당자)	• 부모 중 1인 재직증명서* - 국외 파견 재직자 및 현지 취업자 • 재직회사의 사업자등록증 또는 법인등기부등본* - 현지 취업자와 자영업자 • 국외 재직회사의 법인세 납부내역서* - 현지 취업자 • 자영업자의 국외 세금납부증명서* - 현지 자영업자
	선택 (해당자)	• 학생활동 목록표 및 증빙자료(대학 서식 활용)***
전 교육과정 이수자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29조제2항제7호)	필수 (공통)	• 고등학교 졸업(예정)증명서*
		• 초·중·고등학교 재학증명서*
		• 초·중·고등학교 성적증명서*
		• 출입국사실증명서(학생)
		• 사실증명발급신청 위임장(학생)(대학 서식 활용)
		• 한국어능력시험(TOPIK) 성적증명서
		• 학력조회 동의서(대학 서식 활용)
		• 교육과정 기록표(대학 서식 활용)
		• 외국학교 현황표(대학 서식 활용)
	필수 (해당자)	• 신분증 사본(학생) - 재외국민에 한함

- ※ 국내 고등학교와 재외 한국학교 졸업(예정)자의 성적증명서는 학교생활기록부를 제출하여야 함
- ※ * 표시된 제출서류는 아포스티유 또는 영사확인을 받아 제출해야 함(국내기관 및 재외 한국학교 발급서류 제외)
- ※ ** 표시된 제출서류는 재외국민 미등록의 사유로 제출할 수 없는 경우, 국외 체류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예시: 체류국 현지 기관이 발급한 체류 확인 또는 거주 사실 증명 자료)와 함께 본교 양식의 사유서를 제출해야 함
- ※ *** 표시된 자료는 우리나라 고등학교에 준하는 기간의 활동에 한하여 작성 가능하며, 목록에 기재한 활동에 대한 증빙자료를 함께 제출해야 함(증빙자료 미제출 시 평가 미반영)
- ※ 재직 및 재학, 체류 기간을 입증하는 서류에는 시작일과 종료일의 년, 월, 일의 확인이 가능하도록 기재되어야 하며, 해당 서류에 기재가 불가할 경우 별도의 증빙자료를 제출해야 함
- ※ 재직증명서 상 국외 파견 재직자의 경우, 국외 근무 기간 및 국가가 명시되어 있어야 함
- ※ 법인세 납부내역서(현지 취업자 제출서류) 제출이 불가한 경우, 개인 세금 납부이력서를 제출함
(단, 현지 취업 기관의 정보를 확인할 수 있어야 함)
- ※ 대학 서식은 본교 입학안내 홈페이지(<https://admission.cha.ac.kr/>) ▶ 재외국민/외국인 ▶ 자료실에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음
- ※ 부모 사망 또는 이혼 시 사망/이혼시기 및 친권자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추가서류를 제출해야 함
- ※ 중국인의 경우 호구부가 분리되어 있을 때에는 모든 호구부 및 친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해야 함
- ※ 원서접수일 기준, 졸업예정자의 경우 입학일 전 고등학교 졸업증명서를 제출 기한(2026. 2. 20.(금)) 내에 추가 제출해야 함(2026. 2. 20.발송 소인분까지 인정함)

2. 제출서류 유의사항

- 가. 국외기관에서 발급받은 모든 서류는 해당국 공증기관의 공증 또는 영사확인을 받은 것이어야 함
- 나. 국외에서 재학·졸업한 학교의 졸업(예정)증명서, 성적증명서, 재학증명서 등 공문서는 아포스티유 확인 또는 영사확인을 받아 제출해야 함(교육부 인가 재외 한국학교의 경우 불필요)
- 다. 아포스티유 확인 또는 영사확인을 받은 제출서류가 한글 또는 영문으로 작성되지 않은 경우, 서류의 원본과 번역공증한 한글 또는 영문번역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함(아포스티유 확인 또는 영사확인이 완료되지 않은 서류에 번역공증만을 완료한 서류는 인정하지 않음)
- 라. 제출서류는 원칙적으로 원본이어야 하나, 부득이하게 사본을 제출할 경우 발급기관(또는 해당국의 대한민국 대사관이나 영사관) 또는 본교 입학홍보처의 원본 대조 필한 사본을 제출해야 함
- 마. 제출서류 상의 이름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해당국 법원이 발행하는 동일인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해야 함
- 바. 최종 합격자 중 졸업예정자는 입학일 전까지 고등학교 졸업증명서를 2026. 2. 20.(금)까지 제출해야 함(2026. 2. 20. 발송 소인분까지 인정함)
- 사. 부득이한 사유로 부모가 거주한 나라가 아닌 제3국에서 재학한 경우, 본교 양식의 '제3국 수학인정서'를 증빙자료와 함께 제출해야 하며, 본교 「대학입학전형관리위원회」에서 지원자격을 심의·결정함
- 아. 본 요강에 명시된 제출서류 이외에 지원자격 등의 사실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서류를 추가로 요구할 수 있으며, 추가서류는 소정의 기일까지 추가 제출해야 함

3. 아포스티유(Apostille) 확인서 제출 안내

- ※ 아포스티유 협약 발효 후 교육부의 지침에 따라 모든 지원자는 아래의 제출서류에 대한 아포스티유 확인서 또는 영사확인을 받아 제출하여야 함
- ※ 아포스티유 협약은 협약가입국들 사이에서 공문서의 상호 간 인증을 보다 용이하게하기 위하여 외국 공관의 영사확인 등 복잡한 인증절차를 폐지하는 대신 공문서 발행국가가 이를 확인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다자간 협약임

가. 아포스티유 확인서 발급 대상

- 1) 외국에서 재학·졸업한 학교의 재학증명서, 성적증명서, 졸업(예정)증명서, 기타 국외 발급 공문서
- 2) 사립학교가 발급한 각종 증명서와 공문서는 공증받은 후에 아포스티유 확인서 발급신청을 할 수 있음

나. 아포스티유 확인서 발급기관

- 학교 소재국 정부에서 지정한 기관(해당국 대사관, 영사관 또는 외교통상부에서 아포스티유 확인서 발급사무소, 위치, 연락처를 안내받을 수 있음)

다. 아포스티유 협약국이 아닌 경우 기존처럼 학교 소재국의 대한민국 영사관에서 영사확인을 받아야 함

라. 아포스티유 협약국 현황: www.hcch.net 참조 (관련 문의 ☎ : 02-2100-7600, 외교부)

VII. 지원자 유의사항

1. 대학입학전형기본사항에 따른 유의사항

가. 수시모집 대학지원 횟수 및 복수지원 허용 범위

- 1) 대학입학전형기본사항에서 제시하고 있는 '수시모집'에 해당하는 모든 전형의 지원 가능 횟수는 최대 6회로 제한함(재외국민과 외국인 특별전형(「고등교육법 시행령」 제29조제2항제2호) 포함)
- 2) 지원횟수는 지원한 대학의 수와 관계없이 수시모집에서 지원한 모든 대학(교육대학 포함, 산업대학·전문대학 제외)의 전형을 대상으로 하며, 1개 대학에 복수지원한 경우 각각을 지원한 것으로 산정함
- 3) 지원자가 6개 전형을 초과하여 지원한 경우, 지원자격을 부여하지 않으므로 수험생은 이를 유의하여 지원하여야 함
- 4) 6개 전형을 초과하여 지원할 경우 원서접수 시간순서 상 6회 이후의 접수는 모두 취소 처리되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 입학이 취소됨

나. 복수지원 금지

- 1) 수시모집(산업대학, 교육대학, 전문대학 포함) 대학의 합격자(최초합격자 및 충원합격자)는 등록 여부와 상관없이 정시 및 추가모집에 지원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했을 경우 합격 또는 입학이 취소됨
- 2) 전문대학(산업대학) 수시모집 합격자는 다른 모집시기에 실시하는 대학·산업대학·교육대학 및 전문대학의 모집에 지원할 수 없으며, 대학·교육대학 및 산업대학(전문대학)의 수시모집에 합격한 자도 전문대학(산업대학)이 실시하는 다른 모집시기에 지원할 수 없음
- 3) '대학(산업대학, 교육대학, 전문대학 포함)'과 '특별법에 의해 설치된 대학, 각종학교' 간에는 복수지원 금지 및 이중등록 금지 원칙을 적용하지 않음
※ 특별법에 의해 설치된 대학 및 각종학교: 육·해·공군사관학교, 국군간호사관학교, 경찰대학, 광주과학기술원, 대구경북과학기술원, 울산과학기술원, 한국과학기술원,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 한국예술종합학교, 한국전통문화대학교, 한국폴리텍대학, 한국방송통신대학교 등
- 4) 대학별 입학전형이 종료된 후, 복수지원 위반 사실이 전산자료 검색을 통해 확인될 경우 입학을 무효로 함

다. 합격자 등록 및 이중등록 금지

- 1) 수시모집 합격자는 정해진 수시모집 등록 기간 내에 반드시 등록을 마쳐야 하며, 지정 기간 내에 등록하지 않은 합격자는 등록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함
- 등록: 문서 등록 또는 등록 확인 예치금을 납부한 상태를 의미함
- 2) 모집시기별로 지원하여 입학할 학기가 같은 2개 이상의 대학(산업대학, 교육대학, 전문대학 포함)에 합격한 자는 1개의 대학에만 등록(문서 등록, 예치금 납부 등)하여야 함
- 3) 수시모집 합격자 등록(문서 등록, 예치금 납부 등) 시 1개의 대학에만 등록하여야 하며, 다수의 대학에 등록한 자는 대입지원 위반자로 처리하여 합격을 취소할 수 있음
- 4) 수시모집에 합격 후 등록한 자가 충원합격 발표 기간 중 타 대학의 충원합격 통보를 받아 최종적으로 타대학에 등록하고자하는 경우, 먼저 등록한 대학에 등록 포기 의사를 명확히 전달한 후 충원합격한 대학에 등록하여야 함
- 5) 수시모집 합격자가 충원합격 발표 기간 중 다른 대학의 충원합격 통보를 받은 경우, 차순위 수험생의 합격 기회 박탈 등 선의의 피해자 발생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하여 합격자는 등록을 원하지 않는 대학에 등록 포기 의사를 즉시 전달하여야 함
- 6) 전산자료 검토를 통해 이중등록 금지를 위반한 사실이 확인될 경우, 해당자의 입학을 취소함

2. 대학별 유의사항

가. 원서접수

- 1) 재외국민과 외국인, 전 교육과정 이수자, 부모 모두 외국인인 외국인 전형 중 한 개 전형, 한 개 모집단위에만 지원 가능함(복수지원 불가)
- 2) 지원자 정보 기재 오류 및 누락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본교에서 책임지지 않으므로 정확히 기재하여야 함
- 3) 전형 기간 중 연락이 가능한 국내 전화번호와 주소지를 반드시 기재해야 하며, 연락 두절 및 오기재로 인한 불이익은 본교에서 책임지지 않음
- 4) 원서를 작성하였다 하더라도 전형료 결제(입금)를 하지 않았거나 결제 실패 등으로 결제내용이 확인되지 않은 경우, 원서접수가 이루어지지 않으므로 유의해야 함
- 5) 전형료 결제(입금) 후에 수험번호가 부여되어야 입학원서 접수가 정상적으로 완료된 것임
- 6) 원서접수(전형료 결제) 후 이를 취소하거나 내용을 수정할 수 없으며, 전형료도 반환되지 않음

나. 합격자 발표

- 1) 합격 여부는 개별통지하지 않으므로 지원자가 본교 입학안내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해야 하며, 미확인에 따른 불이익의 책임은 지원자 본인에게 있음
- 2) 미등록 충원 발표는 지정 기간에 본교 입학안내 홈페이지 또는 유선을 이용한 개별발표로 진행함에 따라 유의하여야 하며, 충원 기간 전 입학안내 홈페이지를 통해 세부일정 및 발표방법 등을 공지 예정임. 이에, 해당 내용 미확인에 따른 불이익은 지원자 본인의 책임이므로 반드시 확인할 것을 권장함
- 3) 충원 대상이 되는 예비합격자에게 유선을 이용하여 개별발표를 진행할 수 있으며, 대학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연락처 오기재 및 3회 통화연결 실패 등의 사유로 충원합격 통지가 불가할 경우, 등록 의사가 없음으로 간주하여 등록포기 처리함. 이 경우 개인 사유에 대한 예외 적용 및 등록포기 처리에 대한 반복 불가

- 4) 합격통지서 및 등록금 고지서는 본교 입학안내 홈페이지를 통해 출력하며, 합격자는 정해진 기간 내에 반드시 등록을 해야 함
- 5) 해당 모집단위의 지원자 수가 모집인원에 미달되더라도, 본교의 「대학입학전형관리위원회」에서 지원자의 학업능력이 대학수학능력에 현저하게 부족한 것으로 판단하는 경우에는 입학할 수 없음

다. 기타사항

- 1) 수험생은 면접고사 시 신분증(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을 반드시 지참하여야 하며, 휴대전화 등 통신 기기를 지참할 수 없음
- 2) 신입생은 본교가 정한 특별한 경우(군 입대 등)를 제외하고는 입학 후 1년간 휴학할 수 없음
- 3) 합격 통보를 받은 이후 본교의 입학을 포기하고자 하는 경우 등록포기 절차를 밟아야 하며, 등록포기 신청 후에는 이를 철회할 수 없음
- 4) 기타 모집요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본교 「대학입학전형관리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처리함

3. 합격취소 및 부정행위자의 처리

- 가. **합격취소**: 다음의 경우에는 입학 허가가 취소되며, 입학한 후에도 해당 사실이 발견될 경우 입학이 취소됨
- 1) 입학사정에 사용된 전형자료에 주요사항이 누락되거나 허위 또는 부정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 2) 합격 후라도 지원자격 미달로 밝혀진 경우
 - 3) 고등학교 졸업예정자 중 당해 학년도에 고등학교 졸업자격을 취득하지 못한 경우

나. 부정행위자 처리

※ 대입지원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하거나 이에 협조해 공정한 학생선발 업무를 방해하는 경우, 입학 무효 및 별도의 처벌을 받을 수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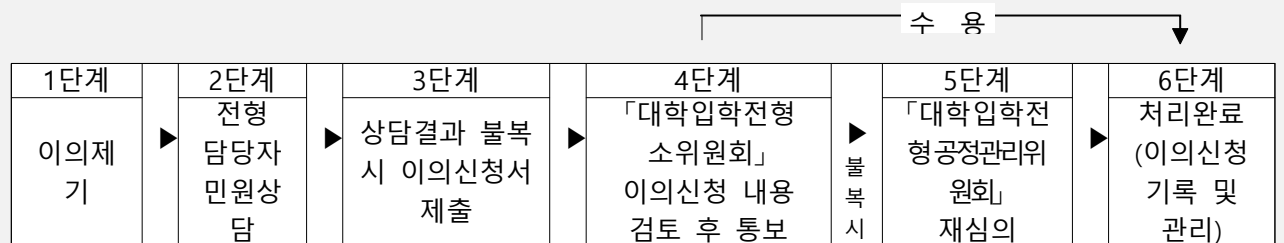
- 1) 입학전형에서 각종 부정행위자는 불합격 처리하며 주요사항 누락, 허위 기재, 위·변조, 대리응시 등 부정한 방법으로 합격 또는 입학한 사실이 확인될 경우 입학 전·후를 막론하고 합격 또는 입학을 취소함
- 2) 입학이 허가된 학생으로서 학력사항 혹은 입학관련 서류의 기재사항이 위·변조 또는 허위로 밝혀져 입학이 취소되는 경우, 해당자가 납부한 등록금은 반환하지 않음. 단, 등록금을 납부한 학기가 종료되지 않은 경우에는 「대학 등록금에 관한 규칙」 [별표]의 반환 기준에 준하여 반환함
- 3) 본교 및 타 대학에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해 입학이 취소된 자는 입학이 취소된 날로부터 일정 기간 동안 본교에 입학할 수 없음

4. 합격취소 및 부정행위자의 처리

- 가. 본교에 지원하는 모든 수험생은 수능 성적의 온라인 제공 동의 여부를 선택할 수 있음
- 나. 수능최저학력기준이 적용되는 약학대학의 지원자(재외국민과 외국인)는 수능 성적 온라인 제공 미동의 또는 수능 미응시의 경우 전형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5. 이의신청 및 처리절차 안내

- 지원자는 대학의 입학전형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대학의 귀책 사유 등에 따라 구체적인 증거가 있는 경우 대학의 결정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음
- 이의신청 절차의 진행 과정은 아래와 같음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본교 입학안내 홈페이지(<https://admission.cha.ac.kr>) ▶ 재외국민/외국인 ▶ 공지사항 ▶ '2026학년도 대학입학전형 이의신청절차 안내'에서 확인 가능함

VIII. 등록포기 및 환불 안내

1. 등록포기 및 환불 안내

- 가. 수시모집(재외국민과 외국인 특별전형 포함) 합격자가 등록을 마친 후 등록을 포기하고자 할 경우, 반드시 정해진 기간 내에 본교 입학홍보처로 등록포기 및 환불 신청을 해야 함
- 나. 수시모집(재외국민과 외국인 특별전형 포함) 합격자가 충원합격 발표 기간 중 다른 대학의 충원합격 통보를 받아 최종적으로 타대학에 등록하고자하는 경우, 차순위 수험생의 합격 기회 박탈 등 선의의 피해자 발생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하여 합격자는 등록을 원하지 않는 대학에 등록포기 의사를 즉시 전달하여야 함
- 다. 등록포기 및 환불신청을 한 경우, 이를 철회할 수 없으니 신중히 신청하여야 함
- 라. 본교 입학안내 홈페이지(<https://admission.cha.ac.kr>) ▶ 재외국민/외국인 ▶ 공지사항 추후 참고
- 마. 본교 입학일 이후 등록금을 납부한 학기가 종료되지 않은 상황에서, 자퇴 등의 사유로 등록금 환불을 원할 경우 「대학 등록금에 관한 규칙」 [별표]의 반환기준에 따라 처리함
- 바. 문의처: 입학홍보처(입학팀) 031) 850-9021~26, 9048, 9058~9

IX. 전형료 및 전형료 환불 안내

1. 전형료(일괄 납부)

모집단위	전형	전형료	수수료	합계
간호대학, 약학대학, 미래융합대학	전형 공통	95,000원	5,000원	100,000원

2. 전형료 환불

- 가. 입학전형의 공정성 확보와 수험생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원서접수(결제 완료) 후에는 지원 철회할 수 없으며 전형료 환불 불가. 단, 아래의 전형료 환불 기준에 해당하는 지원자는 전형료 전액(수수료 제외)을 환불함
 - ①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입학전형에 응시하지 못한 경우
 - ② 질병 또는 사고 등으로 의료기관에 입원하거나 본인의 사망으로 입학전형에 응시하지 못한 경우
 - ※ 해당 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해당 고사일 기준으로 3일 이내 제출하여 본교가 인정한 경우만 해당
- 나. 응시자의 착오로 전형료를 과납한 경우, 과납액 전액을 반환함
- 다. 전형료 비례 환불
 - 1) 본교는 「고등교육법」 제34조의4제5항 및 「동법 시행령」 제42조의3에 따라 입학전형 관련 수입·지출에 따른 잔액이 발생할 경우에 한하여 2026. 4. 30.(목)까지 입학전형에 응시한 사람이 납부한 입학전형료에 비례하여 반환할 예정임
 - 2) 입학전형료 반환 방법은 원서접수 시 아래 방법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함
 - ① 반환대상자가 인터넷 원서접수 시 입력한 금융기관의 환불계좌로 이체
 - ② 본교 직접 방문(반환 방법은 추후 공지)
 - 3) 반환 방법 중 반환대상자가 금융기관의 환불계좌로 이체하는 방법을 선택한 경우에는 반환할 금액에서 금융기관의 전산망을 이용하는 데 드는 비용을 차감하고 반환함(단, 금융기관의 전산망을 이용하는 데 드는 비용이 반환할 금액 이상이면 반환하지 않음)
- 라. 타 대학과의 전형일 중복, 서류 미제출, 단순 변심, 결시 등의 각종 개인 사유로 전형에 응시하지 않을 경우는 전형료를 환불하지 않음. 원서접수 시 작성하는 “전형료 환불계좌”는 전형료 환불 대상자에 대한 환불을 위해 작성하는 것으로 본인 또는 보호자의 계좌(입출금이 자유로운 계좌) 번호를 입력해야 함
 - ※ 입력 오류로 인해 발생하는 불이익은 수험생 본인의 책임으로 유의해야 함



차 의과학대학교
CHA UNIVERSITY

■ Address 120, Haeryong-ro, Pocheon-si, Gyeonggi-do, Korea
■ Phone +82-31-850-9021~6, 9048, 9058~9
■ E-mail admissions@cha.ac.kr

Request for Attendance Records Verification

Date : 2025. . .

To whom it may concern

I am writing to request your school's assistance with our admission process. Specifically, we need you to validate the attendance records submitted by the students who have claimed to previously attend your school and are applying for admission to CHA University. We realize that it is a cumbersome task and one you are not obligated to carry out, but it is imperative that we have accurate academic records of every applicant for a fair evaluation and we would greatly appreciate your help with the matter. All you need to do is check the records of the students in the attached list, mark the enclosed sheet with appropriate information, and email(admissions@cha.ac.kr) the completed form back to us. Once again, thank you for your assistance.

Sincerely yours,

Dean of Admissions Office
CHA University

(Signature)

Letter of Agreement

To whom it may concern :

I attended * _____ from * _____ to * _____ .
(school name) (date) (date)

I hereby acknowledge that I have applied to CHA University for admission in the 2026 academic year and I give my full consent so that CHA University can request my attendance records from the schools I have previously attended.

In this regard, I would like to request you to provide CHA University with their request for verification of my attendance records.

Written by Applicant	Verified by Previously Attended School
Date of Birth : * _____ (Month) (Day) (Year)	☐ Correct ☐ Incorrect
Date of Admission (transfer from another school) : * _____ (Month) (Day) (Year)	☐ Correct ☐ Incorrect
Date of Graduation (transfer to another school) : * _____ (Month) (Day) (Year)	☐ Correct ☐ Incorrect
* _____ Name Signature	Additional comments :
Date : * _____ (Month) (Day) (Year)	Signature _____

※ 지원자는 * 부분만 작성하십시오.

※ 본 양식을 재학한 해외학교 수만큼 별도로 작성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차 의과학대학교
CHA UNIVERSITY

재외국민과 외국인 특별전형 사유서

전형구분	☐ 재외국민과 외국인 ☐ 전 교육과정 이수자		
모집단위		수험번호	
성명		생년월일	

내용			
☐ 학기 결손 / 학기 중복 ☐ 월반 ☐ 조기 졸업 ☐ COVID-19로 인한 온라인 수업 ☐ 학기 중 국내 체류(15일 이상) ☐ 제3국에서 수학 ☐ 서류 관련 사항(전쟁, COVID-19 등으로 인한 서류발급 제출 지연, 원본 서류 후 제출) ☐ 기타			
위 기재 내용은 틀림이 없으며, 만약 허위 기재 사실이 확인되었을 경우 합격한 이후라도 합격 취소나 입학 취소 등 학교 측의 상응하는 조치에 따르겠습니다. 지원자 (인) 2025년 7월 일 차 의과학대학교 총장 귀하			

※ 사유서 제출에 대한 증빙자료를 함께 제출하시기 바랍니다.(학제 차이에 따른 학기 결손 및 중복 제외)

재외국민과 외국인 특별전형 학생활동 목록표

지원자 정보	전 형 명	☐ 재외국민과 외국인		☐ 전 교육과정 이수자	
	모 집 단 위		수 험 번 호		
	성 명		생 년 월 일		

순번	활동명	활동기간 또는 일자	활동내용 (공백 제외 50자 이내 간략 서술)	활동(발행)기관	비고
1					
2					
3					
4					
5					
6					
7					
8					
9					
10					

제출 유의사항

- 우리나라 고등학교 교육과정에 속하는 기간 중에 실시(또는 수상, 취득 등)한 활동에 한하여 작성 가능함
- ※ 해당 기간 외의 활동 기재 시 평가자료에서 제외
- 기재 가능한 개수는 10개를 초과할 수 없음
- 활동내용에는 해당 활동에 대한 객관적 내용을 짧게 작성하되, 본인의 느낀 점 등 자기소개서에 준하는 수준의 내용을 기재할 수 없음
- ※ 활동내용란의 기재는 선택사항이며, 위 내용에 위배될 경우 평가자료에서 제외
- 기재된 내용은 반드시 증빙자료를 함께 제출하여야 하며, 증빙자료는 A4 사이즈의 단면의 형태로 제출하여야 함
- 증빙자료는 원본 제출이 원칙이나, 발행기관 또는 본교 입학홍보처의 원본대조를 필한 경우 사본 제출 가능함
- 국외 발급 서류의 경우 아포스티유 또는 영사확인을 받아야 함(단, 교육부의 인가를 받은 재외한국학교의 발행서류의 경우 예외 가능)
- 증빙자료의 제출순서는 본 목록표의 기재순서와 동일하게 정리하여 제출해야 함
- 1개 활동의 증빙자료는 1건만 제출 가능함
- ※ 불가 예시: 활동명-교과우수상, 제출 증빙자료-여러 과목의 교과우수상 일괄 제출
- 활동명과 증빙자료명이 다를 경우, 비교란에 증빙자료에 기재된 서류명을 기재
- 교사추천서 또는 자기소개서, 학업계획서 등의 자료는 제출할 수 없음
- 활동내용 및 증빙자료 제출 유의사항을 지키지 않은 내용 및 제출서류는 평가자료에서 제외되며, 지원자는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증빙자료의 고의적인 허위사실 기재, 위조 등 기타 부적절한 사실이 발견될 경우, 평가 결과와 관계없이 불합격 처리될 수 있으며 합격(입학) 이후라도 취소될 수 있음

재외국민과 외국인 특별전형 교육과정 기록표

성명		수험번호		국적		연락처	Home:	H-P:																								
자격 구분	☐ 재외국민과 외국인 ☐ 전 교육과정 이수자 ※ 아래에 재학한 학교명과 재학기간을 초, 중, 고교 순서대로 기입(재학증명서 상의 정확한 날짜 기입) / 재학한 학년 및 학기에 V표시																															
학 교 명	학기제			재학기간		학교소재지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기	간	재학년수	국가명	1	2	1	2	1	2	1	2	1	2	1	2	1	2	1	2	1	2	1	2	1	2	1	2	1
	☐ 2	☐ 3	☐ 4	~	년	개월																										
	☐ 2	☐ 3	☐ 4	~	년	개월																										
	☐ 2	☐ 3	☐ 4	~	년	개월																										
	☐ 2	☐ 3	☐ 4	~	년	개월																										
	☐ 2	☐ 3	☐ 4	~	년	개월																										
	☐ 2	☐ 3	☐ 4	~	년	개월																										
	☐ 2	☐ 3	☐ 4	~	년	개월																										
고등학교까지의 총 재학기간	년			개월	외국학교 재학기간	년	개월	중·고교과정 외국학교 재학기간						년			개월	국내고교 재학기간		년			개월									

구 분	외국거주기간		소재지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특이사항
	기	간	거주년수	1	2	1	2	1	2	1	2	1	2	1	2	1	2	1	2	1	2	1	2	1	2	1	2			
부 (父) 성 명 ()	~	년	개월																											
	~	년	개월																											
	~	년	개월																											
모 (母) 성 명 ()	~	년	개월																											
	~	년	개월																											
	~	년	개월																											

위 기재 내용이 틀림이 없음을 확인합니다. 2025. 7 . . 작성자 : (인) (반드시 날인 처리) 지원자와의 관계 :

재외국민과 외국인 특별전형 외국학교 현황표

성명		수험번호		국적		연락처	Home :	H-P :
자격구분	☐ 재외국민과 외국인 ☐ 전 교육과정 이수자 ※ 아래에 재학한 학교명과 재학기간을 초, 중, 고등학교 순서대로 기입							
학교명	국가명	소재지(주소)		연락처(전화번호)		홈페이지	FAX (or) Email	비고

- ※ 재학한 외국 소재 학교를 교육과정 기록표에 기재한 순서대로 기재
- ※ 학교명 및 주소는 한글/영문으로 정확히 기재
- ※ 전화번호 및 Fax 번호는 국가코드, 지역코드를 포함하여 기재

■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138호의2서식] <개정 2022. 12. 29.>

(앞쪽)

사실증명 발급·열람 신청서

APPLICATION FOR ISSUANCE OF / ACCESS TO CERTIFICATE OF FACT

※ 본인이 직접 증명발급을 신청하는 경우 정부24(www.gov.kr)에서 무료로 발급받을 수 있으며, 방문 신청 시에는 신청서를 작성하지 않고 신분증만 제시하면 됩니다.

Free online application available at the government website (www.gov.kr) for the issuance of your own Certificate of Fact. Those visiting an immigration office will be required to present only their ID cards without having to complete this form.

※ 뒤쪽의 유의사항을 참고하여 작성하기 바랍니다.(Please fill out this form by referring to the notes on the back page.)

접수번호 (Receipt No.)	접수일 (Date of Receipt)	발급일 (Date of Issuance)	처리기간 (Processing Period)	즉시 (Immediately)
발급대상자 (위임한 사람) Principal (Authorizing Person)	성명 (Full Name)	연락처 (Phone No.)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또는 국내거소신고번호) Resident Registration No.(Foreign Resident Registration No. or Overseas Korean Resident No.)			
증명종류 Type of Certificate	☐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 ()통 Certificate of Fact on Entry and Departure () copy(ies) ☐ 외국인등록 사실증명 ()통 Certificate of Fact on Foreign Resident Registration () copy(ies) ☐ 외국인등록 열람 ()건 Access to Foreign Resident Registration () time(s)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의 영문 성명 병기 신청 여부 (국민만 해당) * This field is only for Korean citizens.		☐ 포함 ☐ 미포함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의 경우, 과거 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국내거소신고번호), 성명, 체류지 및 체류자격 변경 이력 포함 여부 Previous registration number (Foreign resident registration number or Overseas Korean Resident number), name, address or status of sojourn to be shown on the Certificate of Fact on Foreign Resident Registration		- 과거 등록번호 Previous Registration Number ☐ 포함 Yes ☐ 미포함 No - 과거 성명 변경 사항 Previous Name ☐ 포함 Yes ☐ 미포함 No - 과거 체류지 변동 사항 Previous Address ☐ 포함 Yes ☐ 미포함 No - 과거 체류자격 변동 사항 Previous Status of Sojourn ☐ 포함 Yes ☐ 미포함 No		
출입국 조회기간 (Reference Period for Entry and Departure Record) . . . 부터(from) . . . 까지(to)				
용도 (Purpose) 2026학년도 재외국민과 외국인 특별전형 지원자격 확인				

신청인 (위임받은 사람) Applicant (Authorized Person)	성명 (Full Name)	생년월일(Date of Birth)
	연락처 (Phone No.)	발급대상자와의 관계 (Relationship to Principal)

「출입국관리법」 제8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사실증명의 발급·열람을 신청합니다.
I hereby apply for the issuance of / access to Certificate of Fact in accordance with Article 88 of the Immigration Act and Article 75 of the Enforcement Rule of the Immigration Act.

2025 년(Year) 7 월(Month) 일(Day)

신청인 (Name of Applicant)

(서명 또는 인)
(Signature or Seal)

○○출입국·외국인청(사무소·출장소)장 /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읍·면·동의 장 / 재외공관장 귀하
To the Chief of ○○ Immigration Office(Branch Office) / the Head of ○○ Si·Gun·Gu or Eup·Myeon·Dong / the Head of Overseas Diplomatic Mission

위임장 (Power of Attorney)

위 발급대상자(위임한 사람)는 위와 같은 사실증명의 발급·열람 신청 및 수령에 관한 사항을 위 신청인 (위임받은 사람)에게 위임합니다.

I, the above Principal (authorizing person), hereby authorize the above applicant (authorized person) to apply for and receive the issuance of / access to the Certificate of Fact.

2025 년(Year) 7 월(Month) 일(Day)

발급·열람 대상자(위임한 사람)
Name of Principal(Authorizing Person)

(서명 또는 인)
(Signature or Seal)